

「계량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규제영향분석서

I. 규제심사(안) 개요

□ 심사대상 규제 : 총 28건(신설 12건, 강화 16건)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①법정단위 사용의무 강화 *신설(2) - 제6조제3항, 제80조제2호 - 제6조제4항, 제83조제2항 제3호 *강화(2) - 제80조제1호 - 제83조제2항제2호	○ 현행제도 없음	○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 신설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제도 없음	○ 개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개선결과 보고 규정 신설 *과태료(1백만원 이하)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비법정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비법정단위 사용에 따른 과태료 대상 구체화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광고물을 제조한 자, 의뢰한 자 및 광고한 자
②정량표시상품 대상범위 확대 *강화(1) - 제2조제7호	○ 정량표시상품을 길이, 질량, 부피로 표시된 상품으로 정함	○ 정량표시상품을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로 표시된 상품으로 확대

③정량표시상품 관리 강화 *신설(2) - 제47조제4항, 제80조제2호 - 제47조제5항, 제83조제2항 제3호 *강화(3) - 제79조제10호 - 제80조제8호 - 제80조제7호	○ 현행제도 없음	○ 정량표시 개선명령 규정 신설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제도 없음	○ 개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개선결과 보고 규정 신설 *과태료(1백만원 이하)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를 한 자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3백만원 이하)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 벌금)
	○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정량표시상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정량표시상품에 정량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3백만원 이하)	
④교정대상 측정기 관리 *신설(1) -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83조제2항제14호	○ 현행제도 없음	○ 교정대상 측정기, 교정 주기, 교정 및 재교정 의무 신설 *과태료(1백만원 이하)

⑤계량기 수입업 신고 *신설(1) - 제13조제1항, 제79조제5호	○현행제도 없음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에 신고토록 규정 신설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제조업자 등의 준수 의무 마련 *신설(1) - 제16조, 제83조제2항제7호, 제17조, 제83조제2항제8호 *강화(1) - 제18조	○현행제도 없음	○등록업자 등이 사업에 따른 주요기록을 관리 및 보존토록 규정 신설 *과태료(1백만원 이하)
		○등록업자 등이 사업을 폐업, 휴업 또는 재개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 신설 *과태료(1백만원 이하)
	○등록업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을 규정	○등록업자 등의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 강화
⑦형식승인 취소요건 강화 *강화(1) - 제26조제1항제6호	○거짓 등의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	○취소항목 추가 *폐업시 자동 취소 *사업장 등의 출입이나 계량 기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⑧제조결함 계량기에 대한 시정조치 *신설(1) - 제30조제1항, 제80조제6호, 제3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4호, 제30조제5항, 제83조제2항 제10호	○현행제도 없음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 업자에게 계량기 결함 발생시 시정토록 규정 신설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품결함 내용을 공개 토록 규정 신설 *과태료(300만원 이하)
		○시정조치 및 진행사항 보고토록 규정 신설 *과태료(100만원 이하)

⑨계량기 불법 변조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1) - 제62조	○ 현행제도 없음	○ 형식승인기관 등의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신설 *과징금(1억원 이하)
	○ 현행제도 없음	○ 계량기 변조 등에 대하여 벌칙 이외에 과징금 규정 신설 *과징금(2억원 이하)
⑩벌칙 신설 및 강화 *신설(3) - 제78조제3호 - 제79조제4호 - 제83조제2항제6호 *강화(8) - 제78조제1호 - 제78조제2호 - 제79조제1호, 제79조제7호 - 제79조제2호 - 제79조제3호 - 제79조제6호 - 제79조제8호 - 제80조제4호	○ 현행제도 없음	○ 사용중지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표시증을 임의 제거한 자 대한 벌칙 신설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제도 없음	○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자체수리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제도 없음	○ 정확한 계량을 위하여 수평장치 등을 조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과태료(1백만원 이하)
	○ 변조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기를 변조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등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 판매 및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 수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수리 등을 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이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벌칙 부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증명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 강화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II. 규제심사안

1. 법정단위 사용의무 강화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 신설
 -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80조제2호)
 -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개선결과 보고 규정 신설
 - 개선처분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3조제2항제3호)
 -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 * 현행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비법정단위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구체화
 - * 현행 : 비법정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개정 :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한 자, 광고를 의뢰한 자 및 광고한 자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u> ③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에 대하여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개선처분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개선 처분절차 및 개선결과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u>제47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신 설>	<u>제80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6조제3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u>제51조(과태료)</u>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u> <u><신설></u>	<u>제83조(과태료)</u>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u>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 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한 자, 광고를 의뢰한 자 및 광고한 자</u> 3. <u>제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5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u>
--	---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 설	○	강 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법정단위 사용 의무 강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비법정단위 사용자 계량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상동	-		“		-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생략		서면		의견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경부(타부서)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일반적으로 법정단위의 사용정착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인 규제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비법정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설(강화) 규제 <신설규제> -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규정 신설(안 제6조 제3항, 안 제80조제6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개선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6조 제4항, 안 제83조제2항제3호) *과태료(1백만원 이하) <강화규제> -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80조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한 자, 광고를 의뢰한 자 및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83조제2항제2호)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7. 규제체계도	○ 법정단위 사용 위반(사업자) → 과태료 부과(시·도지사) → 개선명령(지식경제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 개선명령 위반(사업자) → 벌칙 처분(시·도지사) ○ 개선명령(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개선결과 보고 위반(사업자) → 과태료 부과(시·도지사) ○ 비법정단위 표시 계량기 제조 또는 수입(계량기 사업자) → 벌칙 처분(시·도지사) ○ 비법정단위 포함 광고물 제작, 광고 의뢰, 광고(사업자) → 과태료 부과(시·도지사)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비법정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고의나 지속적으로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규제 수단이 없음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이 유통될 경우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인 “비법정단위를 광고에 사용한 자”에 대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비법정단위 사용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법정단위 변경 유도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로 비법정단위 표시 계량기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
-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한 자, 광고를 의뢰한 자 및 광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법에서도 비법정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고의나 지속적으로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가 시장에 유통될 경우 공정거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여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한 자나 광고를 의뢰한 자에 대해서도 광고한 자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함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비법정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고의로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강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비 규제 대안이 없음
- 현행법에서도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으로 비 규제 대안이 없음
-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한 자나 광고를 의뢰한 자도 광고한 자와 동일하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으로 비 규제 대안이 없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위 사용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자에게 개선을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시 과태료 이상의 규제가 요구됨
- 현행법에서도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규제 외 대체 수단이 없음
-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한 자나 광고를 의뢰한 자도 광고한 자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제 외 대체 수단이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신 개선명령을 하고 위반시 벌칙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금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한 자나 광고를 의뢰한 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이외의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규제에 따른 편익

-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법정단위 사용이 조기에 정착된다면 연간 2억원 이상의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비용 : 연간 1억원(기술표준원)
 - * 법정단위 사용 홍보 비용 : 연간 1억원(한국계량측정협회)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의 유통을 차단하여 연간 5천만원의 사후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38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 단속 비용 : 연간 5천만원(230개 시도 계량검사공무원이 2일 단속시)
 - * 비법정단위 표시 저울로 인한 소비자 피해 : 연간 38억원
 - 연간 순금반지 소요량 : 약 30톤
 - 귀금속 업체 돈(소수점 2자리)/g 병기 저울 보유 : 39 %
 - 돈 단위 거래시 최대 손해량 : 0.005 g
 - g 당 금값 시세 : 66,000원
-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광고물을 제조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업자나 광고주가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 비교편익 분석결과

- 개선명령으로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법정단위 사용이 조속히 정착될 경우 비법정단위 사용 모니터링 및 법정단위 사용 홍보비용을 연간 2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음
- 귀금속거래업소에서 비법정단위 병기 기능을 갖는 불법 계량기 사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연간 38억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 광고물을 제조하거나 광고를 의뢰하는 단계부터 비법정단위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광고물에 비법정단위가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법정단위 사용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명령 처분을 신설한 것으로, 고의로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자를 규제함으로써 법정단위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음
-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구분	조문	벌칙	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안 제80조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식품 위생법	제95조 제4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도록 명하였으나, 명령을 위반한 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표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포장,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자

-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 사용이나 비법정단위가 포함된 계량,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여 법정단위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음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지식경제부 및 시·도의 현행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집행가능

2. 정량표시상품 대상범위 확대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정량표시상품을 길이, 질량, 부피 이외에 개수, 면적으로 표시된 상품으로 확대
 - 현행법에서는 길이, 질량, 부피로 표시된 26종의 상품으로 정함
 - 국제기준(OIML)에서는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한 부족량을 관리하고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 <u>실량표시상품</u> "이란 <u>법정계량단위에 따른 길이·질량·부피</u> [이하 " <u>실량</u> "(實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u>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상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7. " <u>정량표시상품</u> "이란 <u>법정단위에 따른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u> [이하 " <u>정량</u> "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u>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정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상품을 말한다.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 설		강 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정량표시상품 사업자	14천업체 (10인 이상)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상동	-		“		“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		서면		이의없음		
		농림수산식품부							
		행안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부(타부서)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국제기준(OIML)에 부합하여 정량표시상품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제존속 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정량표시상품 대상범위를 질량, 부피 단위로 표시된 26종의 상품으로 한정함 ○ 신설(강화) 규제 <강화규제> - 정량표시상품 대상범위를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길이, 개수로 표시된 상품으로 확대함(안 제2제7호)								
7. 규제체계도	○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위반 또는 정량 미표시(정량표시 상품 사업자) → 벌칙 처분(시·도지사)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현행법에서 정량표시상품을 길이, 질량, 부피로 표시된 26종의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OIML), 미국, 일본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을 질량, 부피, 면적, 길이, 개수 단위로 표시된 상품으로 정하고 있음

국가(기구) 속성	한국	국제기준 (OIML)	미국	중국	일본
질량	5 g ~ 25 kg	50 kg 이하	무제한	50 kg 이하	5 g ~ 25 kg
부피	5 mL ~ 25 L	50 L 이하	무제한	50 L 이하	5 mL ~ 25 L
면적	-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
길이	-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
개수	-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25 m ² 이상

<소관부처별 정량표시상품 관리 현황>

소관부처 법령(고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수산업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물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수산업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물부
	계량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등의표 시기준고시, 식품공전)	화장품법 (화장품기 준및시험방 법 고시)	약사법 (대한약전외 일반시험법 고시)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의가공기 준및성분규격고 시, 축산물의표시 기준 고시)	양곡관리법
구분							
1. 쌀 및 보리	○	-	○	-	-	-	○
2. 콩류, 팥 및 콩자반가공품	○	-	○	-	-	-	-
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	-	○	-	-	-	-
4. 전분	○	-	○	-	-	-	-
5. 채소 및 그 가공품	○	-	○	-	-	-	-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	-	○	-	-	-	-
7. 설탕	○	-	○	-	-	-	-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품	○	-	○	-	-	-	-
9. 향신료	○	-	○	-	-	-	-
10. 면류	○	-	○	-	-	-	-
11. 과자류	○	-	○	-	-	○	-
12. 육류	○	-	○	-	-	○	-
13. 꿀	○	-	○	-	-	-	-
14. 우유	○	-	○	-	-	○	-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의 수산물	○	-	○	-	-	-	-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	-	○	-	-	-	-
17. 조미료 등	○	-	○	-	-	-	-
18. 소스류	○	-	○	-	-	-	-
19. 간장 및 식초	○	-	○	-	-	-	-
20. 조리식품	○	-	○	-	-	-	-
21. 조미 반찬류 등	○	-	○	-	-	-	-
22. 음료, 주류	○	-	○	-	-	-	-
23. 액화석유가스	○	-	-	-	-	-	-
24. 윤활유	○	○	-	-	-	-	-
25. 유성도료 등	○	-	-	-	-	-	-
26. 가정용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	○	-	-	-	-	-
27. 두부	-	-	○	-	-	-	-
28. 화장지(화장실용, 미용)	-	○	-	-	-	-	-
29. 샴푸	-	-	-	○	-	-	-
30. 치약	-	-	-	-	○	-	-

1-2. 규제 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량표시상품을 면적, 개수로 표시된 상품까지 확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법에서는 정량표시상품을 길이, 질량, 부피로 표시된 26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면적, 개수로 표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면적, 개수로 표시된 상품의 경우 정량표시상품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외 대체수단 : 없음

- 그동안 면적, 개수로 표시된 상품에 대한 허용오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가의 개수, 면적표시상품 허용오차>

구분	국제기준(OIML)	미국	중국
개수	- 50개 이하 : 0개 - 50개 초과 : 1%	- 50개 미만 : 1개 - 100개 이하 : 3개 - 200개 이하 : 5개	- 50개 이하 : 0개 - 50개 초과 : 1개
면적	표시량의 3%	표시량의 3%	표시량의 3%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시·도의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는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개정안의 범위 확대로 약 5백만원의 사후관리 비용 소요
- * 시·도의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 예산 : 약 5,000만원(2010년도)
- * 면적, 개수로 표시되는 상품 비율 : 정량표시상품의 약 10%

□ 규제에 따른 편익

- 면적, 개수로 표시된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관련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해 지며 공정한 상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됨

<면적, 길이 표시 상품 제조업체 현황>

구분 상품	업체수 (10인 이상)	생산액 (10억원)	주요 관련 상품
섬유 제품 제조업	2,297	14,091	직물, 끈, 로프 등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94	16,715	백상지, 화장지, 종이타월, 벽지 등

* 2009 광업·제조업 통계조사(2010.12, 통계청)

□ 비교편의 분석결과

- 정량표시상품 범위 확대를 통하여 사후관리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관련 상품에 대한 양관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 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국제기준(OIML), 미국, 중국과 같이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로 표시된 상품에 대한 정량관리 강화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지식경제부 및 시·도의 현행 행정자원과 정량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집행가능

3. 정량표시상품 관리 강화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정량표시 개선명령 규정 신설
 -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47조제4항)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80조제2호)
 - *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개선결과 보고 규정 신설
 - 개선처분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47조제5항)
 - 개선처분을 받고도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3조제2항제3호)
 - * 과태료(1백만원 이하)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9조제10호)
 - * 현행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거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안 제80조제8호)
 - * 현행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정량표시상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80조 제7호)
 - * 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칙

- 정량표시상품에 정량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 강화 (안 제80조제7호)

* 현행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신 설>	제47조(정량표시상품)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개선처분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0.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정량표시상품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를 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u>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u> <u>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실량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u> <u>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u> <u>4. 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 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u>	<u>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u> <u>2. 제6조제3항 또는 제47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u>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량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u> <u>8. 제5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u>제83조(과태료)</u> <u>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3. 제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5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u>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정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선언표시 관리 강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정량표시상품사업자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상동	-		“		“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생략		서면		의견 없음			
		농림수산식품부								
		행안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부(타부서)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개선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규제 존속 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위반이나 제거명령 위반에 대해서 벌칙을 강화한 것으로 규제 존속 기한을 설 정할 수 없음 - 허용오차를 초과한 정량표시상품을 판매하거나 정량표시 상품에 정량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으로 규제 존속 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하거나, 제거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 신설(강화) 규제 <신설규제> - 정량표시상품 개선명령 및 위반시 벌칙 규정 신설(안 제47조제4항, 안 제80조제2호)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결과 보고 및 위반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47조제5항, 제83조제2항)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강화 규제>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9조제10호)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거명령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80조제8호)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정량표시상품을 판매한 자나 정량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80조제7호)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7. 규제체계도	○ 정량표시 위반 또는 내용량이 허용오차 초과(정량표시상품 사업자) → 벌칙 처분 → 개선명령(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개선명령 위반(정량표시상품사업자) → 벌칙 부과(시·도지사)

	○ 개선명령(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개선결과 보고 의무 위반(정량표시상품사업자) → 과태료(시·도지사)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표시(정량표시상품 사업자) → 벌칙 부과(시·도지사)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 제거 명령(확인기관) → 표시제거 위반(자기적합성선언표시 사업자) → 벌칙부과(시·도지사)
--	--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현행법에서도 정량표시 위반자에 대해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고의로 또는 지속적으로 정량표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는 공급자자기선언이지만, 지정 받은 확인기관에서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한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됨

- 정량표시를 하지 않거나 정량을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정량표시상품 표시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및 개선결과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개선을 유도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 자기적합성선언표시(k마크)가 허위로 표시되는 것을 막아 k마크 상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 정량표시상품 표시 위반 또는 허용오차 초과 상품 판매에 대한 벌칙 강화를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유도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법에서도 정량 미표시 또는 허용오차 이상 정량이 부족한 상품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고의로 정량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음
- 현행법에서도 자기적합성선언표시 위반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수 양관리 상품에 허용된 k마크가 허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요구됨
- 현행법에서도 정량 미표시 또는 허용오차 이상 정량이 부족한 상품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상품의 대량생산에 따른 사업자 자율관리 강화를 위해 처벌 강화가 요구됨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정량표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제재 수단이 요구됨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 대상이며, 우수 정량관리 사업자에게 허용된 표시가 허위로 사용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가 요구됨
- 정량표시상품에 정량 미표시 또는 허용오차 초과하여 정량이 부족한 정량표시상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정량표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칙 처분이 요구됨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자 또는 표시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는 현행법에서도 과태료 처분 대상임
-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허용오차를 초과한 정량표시상품을 판매한 자는 현행법에서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정량표시상품 개선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에 따른 규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자 또는 표시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허용오차를 초과한 정량표시상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규제에 따른 편익

-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정량표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통해 신속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허위로 표시된 자기적합성선언표시 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k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벌칙 강화를 통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한 정량표시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가능

□ 비교편익 분석결과

- 규제 신설 또는 강화로 인한 규제비용은 없는 반면 정량표시 위반 또는 허용오차를 초과한 정량표시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서 공정한 상거래가 유지되고, 소비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허위로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의 허위표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여 적정함

<정량표시상품 관련 법령의 벌칙 비교>

구분	조문	벌칙	대상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79조 제10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량표시상품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표시를 한자
	제80조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량표시상품 표시위반 또는 허용오차초과 상품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표시 제거를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4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도록 명하였으나, 명령을 위반한 자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
	제45조 제2항 제15호		축산물 표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가공, 포장, 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자
	제47조 제2항 제11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개선을 명하였으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지식경제부 및 시·도의 현행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집행가능

4. 교정대상 측정기 관리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교정대상 측정기, 교정주기, 교정 및 재교정 의무 규정 신설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계량기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지정받지 못한 계량기에 대하여 교정대상 및 주기 등 교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제44조, 제45조)
 - 교정 대상 또는 재교정 대상 측정기를 교정받지 않고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제83조제2항제14호)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신설>	제44조(측정기의 교정)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측정기의 재교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 만료 전에 그 측정기에

	<u>대하여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u> <u>제46조(측정기의 자율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측정기의 정확도 관리 및 측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44조 제1항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이외의 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기를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83조(과태료)</u> <u>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14. 제44조제1항이나 제45조에 따른 교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u>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 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교정대상 측정기 관리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교정대상 측정기 사용 사업자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측정용 계량기 사용 사업자 KOLAS공인기관	-		“		“			
	관련부처	행안부	생략		서면		의견 없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부(타부서)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계량기 관리 체계를 의무관리대상(형식승인, 의무교정) 및 자율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존속 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없음 ○ 신설(강화) 규제 <신설규제> - 교정대상 및 기준에 대한 근거(안 제44조)									

	- 교정주기에 대한 근거(안 제45조) - 교정 및 재교정 대상 측정기를 교정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83조제2항제14호)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7. 규제체계도	o 교정 또는 재교정 의무 위반자 (교정대상 계량기 사용자) → 과태료 부과 (시·도지사)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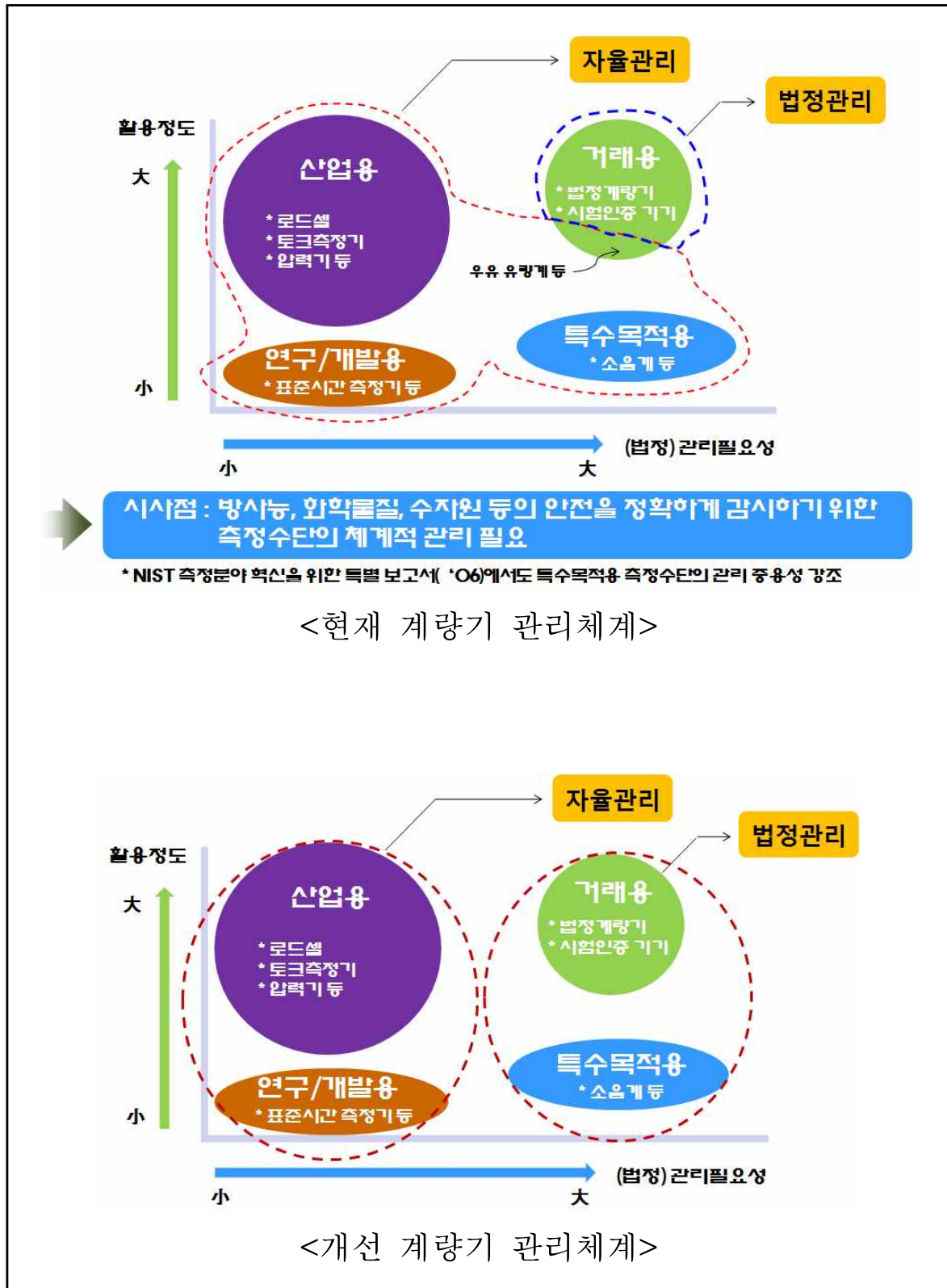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o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이외의 계량기 및 측정기에 대한 교정관리 등의 사항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독일, 일본 등 많은 OECD 국가가 자동차 타이어 압력게이지 등 주요 측정용 계량기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문제발생시 사후 조치에 의존함
 - * 자동차 타이어 압력게이지는 안전상 관리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계량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부재

계량기 관리체계 개선(안)



각국의 계량기 관리대상 품목 비교

분야	법정계량기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질량	분동	●	●	●	●	●	●	●
	비자동저울							
	- 지시저울	●	●	●	●	●	●	●
	- 수동저울	●	●	●	●	●	●	●
	자동저울							
	- 불연속합산(Hopper weighers)			●		●	●	●
	- 연속합산(Belt weighers)			●	●	●	●	●
	- Gravimetric filling			●		●	●	●
	- Rail weighbridges			●	●	●		●
	- Automatic catchweighing instrument							
	; Check weigher			●		●	●	●
	; Weight graders			●		●	●	●
	; Weigh/price labeller and weigh labeller			●		●	●	●
	로드셀		●	●	●			
	Baby scale		●					
	Kitchen Scale		●					
	Small-footprint mat scale		●					
부피	Liquid volume measures for wine, alcohol. etc					●		
	Dipstick for containers					●	●	●
	Berry baskets and boxes				●			
	물 이외의 액체체적 계량기							
	- 석유	●	●	●	●	●	●	●
	- LPG	●	●	●	●	●	●	●
	- 윤활오일					●	●	●
	- 우유				●	●	●	●
	- (난방)오일	●		●		●	●	●
	- 음식류							
	- 탱크로리 계량시스템							
	- 극저온 액체				●			
	수도미터	●	●	●	●	●	●	●
	온수미터	●	●			●	●	●
	가스미터(한국은 가스부피 환산장치 미 포함)	●	●	●		●	●	●
	시험실용기기(액체용 부피계량기)					●		●
	깊이게이지			●				
	부피용 계량기							
	- 비액체용				●			●
	- 액체용				●			●
	탱커							
	고정식 저장탱크							
	Volumetric counters for liquids than water							
	Ship tank							
	탱크로리	●			●			
	눈새김탱크	●						
	Measure containers				●			
	Graduates				●			
	Test meters for size of fish nets							

분야	법정계량기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온도	(상거래용 부피 계량용) 온도계				●	●		
곡물	Measuring instruments for grading cereals					●		●
	곡물수분계량계	●		●	●		●	
	근적외선미량분석기				●			
	Dry measure			●	●			
열량	열량계	●	●	●		●	●	
전기	전력량계(한국은 계기용 변성기 미 포함)	●	●	●		●	●	●
면적	가죽면적계량기		●			●		
	면적계량기						●	●
길이	Special length measures in trade use					●		
	Simple length measures				●		●	●
	Material length measures							
	Fabric measuring device				●			
	Wire and cordage measuring device				●			
차량 운행	Road traffic instruments							
	- 거리계(Odometer)				●	●	●	
	- 택시미터		●	●	●	●	●	●
	- 타이어 압력게이지					●	●	●
	- Pedal force testers							
	- 제동력 Testers							
	- Deceleration meters							
	- Speed limiting equipment for mopeds							
	- Revolution counters							
	- Accelerometer							
	- Timing devices				●			
	Opacimeter							
소음	Sound level measuring instruments							
	- Sound meters		●	●			●	
	- Sound calibrator			●				
	- Integrating averaging sound level meters							
방사선	Siren for civil protection							
	Instruments for the measurement of ionising radiation							
식품	Dosimeter							
	Refractometers for must in grapes			●			●	
	Saccharine meters for sugar in beet juice			●			●	
	Food conservation thermometers						●	
	Alcohol meters and alcohol hydrometers							
의료	Thermometer for use in alcoholometry							
	Medical measuring instruments							
	- 혈압계	●	●	●				
	- 청력계(Audiometers)							
	- 보청기(Hearing aids)							
	의료용 온도계	●	●	●				
	초점거리계량기			●				
	전자식심전도계			●				

분야	법정계량기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단속용	주사기							
	Law enforcement instruments							
	- Chronotachograph					●	●	
	- 속도 계량기	●		●		●	●	
	- 호흡분석기			●		●	●	
	- Depth gauges for liquids for tax purposes					●	●	●
	- 축중기	●		●				
	- 비자동 weigh bridges							
	- 배기가스 계량기		●			●	●	
	- Smoke meter			●				
	- Go-and-Stop surveillance instruments							
	이동식 연소계량기							
환경	Hydrocarbon gas vapor measuring device			●	●			
	Carbon dioxide liquid measuring device			●	●			
	Densimeter		●					
	조도계		●					
기타	Measuring instruments analysing milk					●		
	Manometers used in high risk equipment							
	Clocks for multi tariff energy meters			●				
	Counters for gaming machines							
	경도용 시험블럭							
	다차원 계량기				●			
	Health meter		●					

1-2. 규제 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자동차 타이어 압력 게이지, 혈압계, 체온계 등과 같은 측정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측정의 신뢰도 제고
- 관리의 필요정도에 따라 계량기 관리체계를 의무관리대상(형식 승인, 의무교정)과 자율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국민안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량기 또는 산업용 측정기의 관리에 있어 임의제도인 교정관리로는 한계가 있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방사능, 화학물질, 수자원 등의 안전을 정확하게 감시하기 위한 특수 목적용 측정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
 - * 2006년 NIST 측정분야 혁신을 위한 특별보고서에서도 특수목적용 측정수단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유사사례

[유사 입법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경우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의 대체수단 : 없음

- 산업용이나 연구개발용 측정기와 달리 안전과 관련된 특수목적용 측정기는 철저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해당 측정기를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교정하도록 규제하여야 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특수목적용 계량기는 대상이 넓지 않음. 각 분야별 특수목적용 측정기를 조사한 후 국가교정기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법정 관리 할 수 있음.
- 이미 대부분의 특수목적용 측정기가 교정받아 사용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측정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함에 따라 의무 교정 측정기를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음.

□ 규제에 따른 편익

- 방사능, 화학물질, 수자원 등에 대한 사고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엄청난 사후조치 비용이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 비교편의 분석결과

- 소량의 특수목적용 측정기에 대한 법정관리를 통하여 방사능, 화학물질, 수자원 등 관련 사고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 예방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전세계적으로 측정기의 정확도를 보증하기 위하여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교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예상문제점 없음
 - 「국가표준기본법」 제12에 따른 235개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통하여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5. 계량기 수입업 신고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에 신고토록 규정 신설
 - 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에 벌칙 신설(안 제79조 제5호)
-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수입업의 신고) ①계량기 수입업을 업(이하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u><신 설></u>	5. <u>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 한 자</u>
--------------------	--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계량기 수입업 신고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계량기 수입업자	55업체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상동	-		“		-			
	관련부처	행안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법무부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수입 계량기의 제품결함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와 결함제품 수거 등의 시정조치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규정으로 지속적인 규제 필요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신설제도로써 기존 규정 없음 ○ 신설(강화) 규제 <신설규제> -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에 신고토록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1항, 안 제79조제5호)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규제체제도	○ 계량기 수입업 신고(수입업자) → 신고접수(시·도지사) → 신고증 교부(시·도지사) → 위반시 벌칙(시·도지사)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요건에 따른 검사설비를 갖추어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는 반면 수입업은 최소한의 신고절차도 요구하지 않아 국내 제조업과 형평성 문제 발생
- 계량기 제품결함 발생시 수입업자에 대한 소재지 등의 파악이 어려워 즉각적인 시정명령이 어려움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수입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통하여 국내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시·도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 저가의 계량기를 수입·판매한 후 잠적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에 소재지 등을 신고토록 하며, 제품결함시 이를 추적하여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계량기 수입업에 대한 시·도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조차 어렵고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수집체계도 없어 결함제품 발생시 조기 시정조치 등을 추진할 수 없음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불량계량기 유통 발생시 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려 해도 관련 소재지 등의 정보가 없어 즉시 반영되지 못하여 소비자의 장기간 피해노출이 불가피 함

□ 유사사례

[유사 입법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①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①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③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수입허가를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의 대체수단 :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정부는 현행 시·도의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수입업 신고업무가 가능하며, 수입업자는 신청에 따른 최소 행정수수료 부담

○ 계량기 수입업 현황

-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수입업체는 현재 55개임

- 계량기 제작업 등록수수료(5만원) 적용시 2.7백만원 소요

* 연간 신규 수입업 수는 10개 미만

□ 규제에 따른 편익

- 계량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사라지는 일부 수입업자 등에 대하여 수입업 신고를 통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편익이 큰 것으로 예상됨(비용 언급)

□ 비교편익 분석결과

- 최소한의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이 미미하며, 결함이 발생된 제품의 확산 방지에 따른 편익을 비교형량하면 편익이 크다고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시·도에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형식승인 기관을 통하여 제품 승인을 받는 국내 제조업과 비교할 때 수입업 신고는 형평성이 맞으며 수입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신고의무만 부여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시·도의 현행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집행가능

6. 제조업자 등의 준수 의무 마련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등록업자 등이 사업운영에 따른 주요기록을 관리 및 보존토록 규정신설
 -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또는 자체수리자는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6조)
 -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3조제2항제7호)
 -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 등록업자 등이 사업을 폐업, 휴업 또는 재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신설
 -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업을 폐업, 휴업 또는 재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17조)
 -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3조제2항제8호)
 -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 등록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신고의 효력정지 등의 규정 강화(안 제18조)
 -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행위, 등록설비 임대,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또는 부정한 행위 발생시 해당 등록의 취소, 신고의 효력정지, 인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명하도록 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6조(등록업자 등의 준수 및 금지 사항) ①계량기의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자체수리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u> <u>1.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u> <u>2. 수리업자의 수리내역</u> <u>3. 계량증명업자가 발행한 증명서 및 관련 내역</u> <u>4. 자체수리자의 수리내역 및 검사기록</u> <u>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u> <u>②계량기의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자체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등록을 위하여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검사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u> <u>2.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u>

	3. <u>수리업자나 계량증명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u> 4. <u>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u>
<u><신 설></u>	제17조(폐업 등의 신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업을 폐업, 휴업 또는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시·도지사는 제작업자, 수입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u>	제18조(등록의 취소 및 신고의 효력 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수입업자 또는 자체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취소, 신고의 효력정지, 인정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 신고의 효력정지 또는 인정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u>

<u>2.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자</u> <u>3. 제9조를 위반하여 양도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u> <u>4.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용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u>	<u>2.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u> <u>3. 제11조제3항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u> <u>4. 제12조제3항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u> <u>5. 제13조제2항 따른 신고사항의 범위를 넘어 영업을 한 경우</u> <u>6. 제1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u> <u>②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신고의 효력정지, 인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u> <u>③시·도지사는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u> <u>④제17조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u>
---	---

<u><신 설></u>	<u>제83조(과태료) ②</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7.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자</u> <u>8. 제17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u>
---------------------------	---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제조업자 등의 준수 의무 마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2,000업체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상동		-		“		-			
	관련부처	법무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지경부(타부서)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계량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존속기한 미설정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제작업자, 수입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대하여 일부 규정함 ○ 신설(강화) 규제 <신설규제> - 등록업자 등이 사업에 따른 주요기록을 관리 및 보존토록 규정 신설(안 제16조제1항, 안 제83조제2항제7호)										

	*과태료(1백만원 이하) - 등록업자 등이 사업을 폐업, 휴업 또는 재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17조, 안 제83조제2항제8호) *과태료(1백만원 이하) <강화규제> - 등록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 강화(안 제18조)
7. 규제체계도	○ 계량기 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신고(제조업자, 수입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 신고접수(시·도지사) → 위반시 과태료 부과(시·도지사) ○ 등록 취소 등의 위반사항 발생(제조업자, 수입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 신고접수(시·도지사) → 현장확인(시·도지사) →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취소 통보(시·도지사)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사업에 따른 기록에 대하여 보관 의무가 없어 사후관리시 관련 위반사실 입증이 어렵고, 사업 폐업 등에 따른 신고절차도 없어 시·도에서 현황파악에 어려움 발생

- 등록업자 등이 최초 등록 이후 불법 행위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적 제재조항이 없어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등록업자의 준수 의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등록기준 유지를 유도하며, 위반사항 발생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식승인 관련서류, 수리내역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 및 등록업 등의 폐업, 휴업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사후관리시 위반사실 입증 및 현황파악이 어려움
- 등록업자 등의 경우 사업과정에서 검사설비 임대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재수단이 없음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제조업 등록을 위하여 검사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대해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취할 수 없어 제도의 신뢰성에 큰 흠집이 가해질 우려가 큼

☐ 유사사례

[유사 입법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에서는 승강기를 제조 또는 수입등록업자는 그 사업을 폐업, 휴업 또는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2조제6호의2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①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의 대체수단 :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제조업자, 수리업자 등의 기록보관은 사업 수행에 따른 승인서 등 일부 중요자료로 한정되어 보관에 따른 큰 비용 부담이 없음
- 정부는 현행 시·도의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업무 및 자체수리자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휴업 등의 신고 접수업무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수수료는 없음

□ 규제에 따른 편익

- 최초 등록 이후 지속적인 등록기준 유지 및 사후관리 가능
- 사업 폐업 등에 따른 변경사항 관리로 실제 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 비교편익 분석결과

- 최소한의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이 미미하여 편익을 비교형량하면 편익이 크다고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소비자와의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리목록, 증명서 등 관련 기록의 보존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짐

- 등록제로 운영되는 제조업 등의 경우 검사설비 등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의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 마련이 적정함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시·도의 현행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집행가능

7. 형식승인 취소요건 강화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계량기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사업 폐업이나 형식승인기관의 사후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 강화
 - 사업을 폐업한 경우(안 제26조제1항제2호)
 -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형식승인기관 등이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 등의 출입이나 계량기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안 제26조제1항제6호)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u>제16조(형식승인의 취소)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u> 1. <u>제6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u> 2.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u>	<u>제26조(형식승인의 취소)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u> 2. <u>제17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u>

<u>을 받은 경우</u> <u>3.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u> <u>4.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u> <u>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3. 제18조에 따른 등록 취소나 신고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u> <u>4.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u> <u>5.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u> <u>6. 제29조제2항이나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시 사업장 등의 출입이나 계량기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u> <u>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u> <u>③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u>
---	--

	<u>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u>
--	--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 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형식승인 강화	취소요건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계량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355업체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상동	-		“		-				
	관련부처	지경부(타부서)	생략		서면		이의없음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를 수입 또는 제조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및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폐업 등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조항 없음 - 사업장 출입 및 시료채취 거부에 대한 제재 조항 없음 ○ 신설(강화) 규제 <강화규제> - 제조업, 수입업을 폐업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토록 규정 강화(안 제26조제1항제2호) - 불법계량기 유통방지 등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출입이나										

	계량기 제출을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토록 규정 강화(안 제26조제1항제6호)
7. 규제체계도	○사업 폐업 신고(제조업자, 수입업자) → 과태료처분(시·도지사) → 형식승인 취소(형식승인기관의 장) → 형식승인 취소통보(형식승인기관의 장) ○사후관리실시(형식승인기관) → 사후관리 거부(제조업자, 수입업자) → 과태료처분(시·도지사) → 형식승인 취소통보(형식승인기관의 장)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유효기간이 없는 형식승인의 경우 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폐업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식승인기관이 관련 서류 일체를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계량기 특성상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제재조항이 없어 형식승인기관의 사후관리 실효성이 떨어짐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형식 승인 취소로 관련서류 등의 보관에 다른 행정비용 감소 및 실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향상시키기 위함
- 형식승인 받은 제품의 불법변경 등 불량계량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형식승인기관의 조사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임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조업자 등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식승인기관이 관련 문서 등을 폐기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
- 형식승인기관이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활동을 하여야 하나 제조업자 등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형식승인 제품의 사후관리와 형식승인 관리의 행정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입이 불가피한 규정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의 대체수단 : 없음

-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위한 조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수단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정부는 현행 시·도의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으로 폐업신고 접수업무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수수료는 없음
- 형식승인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므로 그 밖의 규제비용 발생은 없음

□ 규제에 따른 편익

- 폐업한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형식승인의 취소에 따라 관련 문서 등의 폐기에 따른 유지관리에 행정적 편익 발생
- 형식승인 받은 제품에 대한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편익이 큼

□ 비교편익 분석결과

- 행정적인 비용부담과 비교형량한 결과 편익이 상대적으로 큼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 의 적정성

- 피규제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없이 형식승인 사후관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님

3-2. 규제 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예상문제점 없음
 - 현행 시·도의 행정자원을 활용하고, 형식승인기관의 인력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인력 및 예산으로 집행가능

8. 제조결함 계량기 시정명령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에게 계량기 결함 발생시 시정토록 규정 신설
 -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는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0조제1항)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한 벌칙 신설(안 제80조제6호)
 -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에게 계량기 제품결함 내용을 공개토록 규정 신설
 -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는 계량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계량기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 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30조제1항)
 - 제품결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3조제1항제4호)
 - * 과태료 : 3백만원 이하
- 제품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및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규정 신설
 -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는 시정조치계획 및 진행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30조제5항)
 - 시정조치나 진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3조제2항제10호)
 -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30조(제품결합의 시정) ①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는 계량기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계량의 오차에 영향을 주는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량기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준 중 표시사항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u> <u>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u> <u>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에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u>

	<u>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19조제2항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④지식경제부장관은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을 통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u> <u>⑤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48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u><신 설></u>	<u>제80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7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u>6.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u>제51조(과태료)</u> ①다음 각 호의 어	<u>제83조(과태료)</u> ①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u>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 제품결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자</u>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u>제30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진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u>
---	---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 설	○	강 화		내 용 심 사		존 속 기 한 연 장	
	제조결함 계량기에 대한 시정조치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계량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2,000업체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상동	-		“		-			
	관련부처	법무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지정부(타부서)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제품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 으로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종전규제 없음 ○ 신설(강화) 규제 <신설규제> -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에게 계량기 결함 발생시 시 정토록 규정신설(안 제30조제1항, 안 제80조제6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에게 계량기 제품결함 내용을									

	공개토록 규정 신설(안 제30조제1항, 안 제83조제1항제4호) *과태료(3백만원 이하) - 제품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및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30조제5항, 안 제83조제2항제10호) *과태료(1백만원 이하)
7. 규제체계도	○ 제조결함 신고(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 시정조치 계획 및 진행사항 자율보고(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 시정조치 불이행시 시정명령(지식경제부장관) → 시정조치결과 보고(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계량기 제조결함 발생시 수리, 수거 등을 위한 근거가 없어 관련 제품의 개선 및 유통차단 등에 한계가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제조업자 등이 제조결함에 대하여 스스로 자율 개선토록 하고 필요시 정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결함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유통 중인 계량기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수거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수단이 없음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제조결함 계량기의 수거 등 시정명령을 위하여 도입이 불가피한 규정임

□ 유사사례

[유사 입법례]

-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물품 등을 자진 수거하는 등의 소비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제작한 자동차 또는 부품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제작결함을 공개하고 시정토록 규정

◆ 「소비자기본법」 제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

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물품등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수거·파기 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 원동기출력표시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외 대체수단 :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정부는 기존의 형식승인기관을 통하여 결함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규제비용 발생은 없음

□ 규제에 따른 편익

- 결함제품에 대하여 제조사 등이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유도하며, 필요시 정부가 이를 강제하여 피해를 확산을 줄임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편익이 발생함

□ 비교편익 분석결과

- 제품 결함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대량으로 유통되는 계량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편익을 비교형량할 때 규제로 인하여 발행하는 편익이 막대하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제시하는 규정으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과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강조하는 규제방안으로 적정함
- 대량으로 생산되어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특성상 결함발생시 직접적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제품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방법이 필요함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지식경제부의 현행 행정자원을 활용하고, 형식승인기관의 시험 인력 및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집행가능

9. 계량기 불법변조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1.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형식승인기관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신설
 -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정량상품확인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2조제1항)
- 계량기 변조 등에 대하여 벌칙 이외에 과징금 규정 신설
 -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62조제2항)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과징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 제37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업무정지로 인하여 형식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3항 따라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 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계량기 불법변조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계량기 사용자,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정량표시상품 확인기관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상동	-		“		-			
	관련부처	법무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지정부(타부서)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소비자 행정적 편리와 계량기 불법조작 근절을 위하여 필 요한 규정으로 존속기한 미설정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종전규제 없음 ○ 신설(강화) 규제 <신설규제> - 형식승인기관 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규정 신설(안 제62조제1항) *과징금(1억원 이하)									

	- 계량기 변조 등에 대하여 벌칙 이외에 과징금 규정 신설(안 제62조제2항) *과징금(2억원 이하) -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반행위 종류, 위반정도별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함(안 제62조제3항)
7. 규제체계도	○ 형식승인기관 등의 위반행위 적발(지식경제부장관) → 위반종류에 따른 취소 및 업무정지 결정(지식경제부장관) → 취소통보 또는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결정 및 부과(지식경제부장관) ○ 불법조작 등 위반행위 적발(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 위반종류에 따른 벌칙 부과(시·도지사) → 과징금 결정 및 부과(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또는 정량상품 확인기관에 의한 규정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정지처분시 제조사 등의 형식승인 취득 등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행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움
- 계량기 불법 변조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커 계량기 불법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벌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 주유량이 자동으로 적어지도록 불법 프로그램 설치사건(SBS 뉴스 2012.3.27)
 - * 리모컨을 이용한 주유기 정량조작 사건(한국소비자신문 2011.7.22)

1-2. 규제 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형식승인기관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마련 및 계량기 불법조작 근절을 위한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형식승인기관 등의 위반사항 발생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나 이로 인하여 제조사 등이 형식승인을 받는데 불편 발생
- 계량기 불법 변조로 인한 이익금이 벌금보다 커서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불법 변조행위에 대한 근절 및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제도 도입이 가장 실효성이 있음

☐ 유사사례

[유사 입법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업소 등이 영업정지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5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군·구에 귀속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외 대체수단 :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정부는 기존의 행정조직으로 가능하며 그 밖의 규제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음

□ 규제에 따른 편익

- 형식승인기관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소비자 불편 없이 지정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됨
- 계량기 불법 변조로 인한 이익을 차단함으로써 상거래의 공정성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유익한 파급효과가 발생

□ 비교편익 분석결과

- 계량기 형식승인기관 등의 업무정지로 인한 제조사 등의 불편 없이 지정기관을 감독할 수 있으며 불법변조 예방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한 편익을 비교형량할 때 규제로 인하여 발행하는 편익이 막대하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형식승인기관 등의 업무정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막으면서 효과적으로 형식승인기관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합리한 규제가 아님
- 계량기 불법 변조로 인한 이익금이 벌칙보다 커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규제방안으로 적정함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과징금 제도는 계량기 불법 변조나 형식승인기관 업무정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예방차원이 주목적임
- 지식경제부 및 시·도의 현행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집행가능

10. 벌칙 신설 및 강화

①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사용중지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표시증을 임의 제거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78조제3호)
 -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자체수리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79조제4호)
 -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확한 계량을 위하여 수평장치 등을 조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3조제2항제6호)
 - * 과태료 : 1백만원 이하
- 변조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8조제1호)
 - * 현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8조제2호)
 - * 현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9조제1호, 안 제79조제7호)
 - * 현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등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를 판매 및 유통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9조제2호)

* 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 수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리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9조제3호)

* 현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이를 표시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9조제6호)

* 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79조제8호)

* 현행 :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증명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80조제4호)

* 현행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제9조제6호를 위반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1. 제7조제6호에 따른 변조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 구조를

<u><신 설></u>	<u>변조하거나 사용 한 자</u> 3. 제59조제1항에 <u>사용중지 표시</u> <u>증이 부착된 계량기를 사용하거</u> <u>나,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고</u> <u>사용한 자</u>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9조제3호를 위반하여 계량 기의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 작한 계량기 또는 제12조제1항 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 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판 매하거나 광고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9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 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계량기를 양도하거 나 대여한 자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7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 한 자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을 각 호 외의 전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u>2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u>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u>	<u>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u>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u><신 설></u>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u>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수리한 자</u>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u>형식승인·검정 또는 기준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u>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 제31조제1항에 따른 <u>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u>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u>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u>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7.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u>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u>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6. <u>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한 자</u>	8. <u>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u>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u>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을 업으로 한 자</u>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4. <u>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 자</u>
제51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제83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u>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정장치를 조정하지 않고 사용한 자</u>

2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 번호		2. 구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별칭 신설 및 강화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계량측정제도과 연구사 임남혁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계량기 사용자, 제조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계량증명업자, 계량기 사용자	-		입법예고		-				
	이해관계자	상동	-		“		-				
	관련부처	법무부	생략		서면		-				
지정부(타부서)											
5. 규제존속 기한	○ 미설정 -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및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기 구조를 변조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 여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 수입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리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이를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신설(강화) 규제 <신설규제> - 사용중지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표시증을 임의 제거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78조제3호)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자체수리를 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79조제4호)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확한 계량을 위하여 수평장치 등을 조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83조제2항제6호) *과태료(1백만원 이하) <강화규제> - 변조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하여 벌칙 강화(안 제78조제1호) *현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기 구조를 변조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벌칙 강화(안 제78조제2호) *현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식승인이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판매하거나 광
--	--

	고한 자에 대하여 벌칙 강화(안 제79조제1호, 안 제79고제 7호) *현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없는 계량기를 판매 및 유통한 자에 대하여 벌칙 강화(안 제79조제2호) *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업, 수입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리한 자에 대하여 벌칙 강화(안 제79조제3호) *현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이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벌칙 강화(안 제79조제6호) *현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 강화(안 제79조제8호) *현행 : 7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량증명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에 대하여 벌칙 강화(안 제80조제4호) *현행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 7백만원 이하의 벌금
7. 규제체계도	○ 위반행위 적발(시·도지사) → 위반종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결정 및 부과(시·도지사)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불법계량기 사용중지처분 등 현행 법률에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한 위반시 적용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일부 없어 적절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짐
- 계량기 불법 변조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커 계량기 불법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벌칙 강화가 필요
 - * 주유기 프로그램조작(2012.3.27), 저울 스프링 조작(2010.3.12), 전력량계 입출력 단자 조작(2010.1.6), 수도미터 연산부 조작(2008.4.4) 등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불법적인 계량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법 집행의 실효성 달성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 법률에는 불법계량기에 대한 사용중지처분, 자체수리자 인정, 정확한 계량을 위한 수평장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계량기 불법변조에 따른 이익이 커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 어려움 발생

<비 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사용중지된 계량기의 임의 사용 등 불법 계량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없이 달성할 수 없음

□ 유사사례

[유사 입법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석유 판매시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생략)

5.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자

6. ~ 10.(생략)

제4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생략)

10.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사용공차 초과)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2. ~ 5.(생략)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생략)
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8.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생략)
4. 제38조제1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외 대체수단 : 없음

-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 외 대체수단이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정부는 기존 시·도의 행정조직으로 가능하며, 그 밖의 규제비용 발생은 없음

□ 규제에 따른 편익

- 규제의 결과 제도의 신뢰성 유지 및 불법 계량행위 가능성 배제라는 편익이 큼

□ 비교편익 분석결과

- 규제는 비용편익차원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 필요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계량기 불법 변조로 인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정은 그 편익을 고려할 때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제로 판단

3-2.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의 기준과 절차 및 이해용이성 측면에서 명확하고, 처분권자인 시·도의 업무 부담 없이 집행가능